

#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 
번호 2538

제출년월일 : 2014. 0. 28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안이유

- 도로명 주소 고시(2011.7.29.)에 의거 동 조례상 제2조(위치)의 주소 변경

## 주요내용

- 가. 착오 기재된 행복예절관의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2조)

구분	주소 변경 내용		비고(근거)
	변경전	변경후	
	안산시 단원구 장미내음길 30(고잔동)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배2길 64-8(고잔동)	도로명주소법, 안산시 도로명 주소 조례

- 나. 2013.8.2일자로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로 전면 개정되면서 개정이 누락된 조항을 수정함.(안 제13조)

##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##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안산시 단원구 장미내음길 30(고잔동)으로”를 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배2길 64-8(고잔동)로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안산시에 소재하는”을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있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안에서”를 “에서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1회에 한”을 “1회에 한정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여성가족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여성가족과장 하순자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순애 (행정 2606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치) 안산시 행복예절관(이하 “예 절관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<u>안산시 단원 구 장미내음길 30(고잔동)</u> 으로 한다.	제2조(위치) ----- -----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배2길 64-8(고잔동)로 --.
제3조(이용대상) 예절관의 이용대상은 안산시민, 거주외국인 또는 <u>안산시에 소재하는</u>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.	제3조(이용대상) ----- -----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있는 ----- -----.
제5조(강사) ① ~ ③ (생 략)  ④ 제1항과 제3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<u>안에서</u>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	제5조(강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④ ----- -- 범위 ----- -----.
제6조(시민강사양성) 예절관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민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예산의 범위 <u>안에서</u> 시민 강사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6조(시민강사양성) ----- -----에서 ----- -----.
제8조(관리 · 운영의 위탁) ① (생 략)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<u>1회에 한하여</u> 재위탁할 수 있다.  ③ (생 략)	제8조(관리 · 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----- 1회에 한정 ----- -----.  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운영비의 지원)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절관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 <u>안에서</u> 예절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9조(운영비의 지원) ----- ----- ----- -- 범위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지도감독)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절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·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또는 <u>기타</u> 관련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	제11조(지도감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.
제12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1. <u>허위</u>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.·3. (생 략) ② 수탁자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위탁이 취소되거나, 제8조에 <u>의한</u>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·자료·장비 및 비품일체를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	제12조(위탁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. 1. <u>거짓</u> ----- 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예절관의 위·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「 <u>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u> 」-----.